



전남대학교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

- 가. 연구진흥과-2383(2024.04.15.) 「2024년도 제4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」
나. 연구지원부1244(2024.04.16.) 「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 확정 및 시행」(총장 결재)

2.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을 2024년 제4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 주요 내용

○ 개정이유

- 2023년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등(23.12.28.) 일부개정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」(23.3.30.)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및 비목별 계상, 집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변경

○ 주요 내용

-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[별표 3]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

비목	세목	주요 변경 내용
인건비	학생 인건비	■ 소속 학생연구자별 최저 10%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정 반영
연구 활동비	회의비	■ 「학술진흥법」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, 해당 연구개발 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계상 가능 문구 내용 명확화함

○ 공포일: 2024. 4. 17.(수)

- 붙임 1.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 1부.
2.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전문 1부. 끝.

연구처장



수신자 전 기관, 부속시설

연구지원3팀장 류수정 연구지원부장 이상곤 연구부처장 권윤구 연구처장 2024.04.17. 하준석

협조자

시 행 연구지원부-1259 (2024.04.17.) 접 수 ()

우 / www.jnu.ac.kr

전화번호 062-530-5031 팩스번호 062-530-1299 / sujung97@jnu.ac.kr / 공개